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수출현안 및 동향

유럽연합, 동물 영양용 사료 첨가제 *Saccharomyces cerevisiae* UCL 39885등의 승인

- 2003년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첨가제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규정 (EC) No 1831/2003이 제정됨. 이는 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동물 사료를 통한 인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임. 또한 이 규정은 유럽 내에서 동물 사료 첨가제의 사용을 표준화하고, 국제 무역에서도 이 표준에 따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이 규정에서 사료 첨가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분류함.

(1) 기술적 첨가제: 기술적 목적으로 사료에 추가되는 물질

- 세부 기능 목록: 보존제, 향산화제, 유화제 등

(2) 감각적 첨가제: 동물 사료에 첨가되어 사료의 맛, 냄새, 색상 등 감각적 특성을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첨가제

- 세부 기능 목록: 색소, 향미 증진제

(3) 영양 첨가제

- 세부 기능 목록: '비타민, 프로비타민 및 유사 물질', '미량 원소 화합물', '아미노산, 그 염 및 유사체', '요소 및 그 유도체'

(4) 생리활성 첨가제: 동물의 성장과 관련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료 첨가제

- 세부 기능 목록: 소화 개선제, 장내 미생물 안정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 기타 생리활성 첨가제

(5) 코시디오스타트(coccidiostats) 및 히스토모노스타트(histomonostats):
코시디아(coccidia) 기생충과 히스토모나스속(histomonas)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는 물질

- 고양이를 위한 사료 첨가제로 제제 ‘Saccharomyces cerevisiae MUCL 39885’가 규정 (EC) No 1831/2003에 따라 허가 신청되었음. 신청인은 이 제제가 ‘(4) 생리활성 첨가제’ 범주의 ‘장내 미생물 안정제’ 기능 그룹으로 분류할 것을 요청함. 유럽위원회는 이 제제가 (EC) No 1831/2003의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보관 조건 명시, 열처리 안정성 명시 등의 전제로 승인함.
- 모든 동물 종에 대한 사료 첨가제로 (Corynebacterium glutamicum CGMCC 18932에서 생산된) L-발린(L-Valine)이 규정 (EC) No 1831/2003에 따라 사용 승인을 위해 신청되었음. 이 L-발린은 동물의 사료와 음용수에 사용되기 위한 사료 첨가제로서 ‘(3) 영양 첨가제’ 범주의 ‘아미노산, 그 염 및 유사체’ 기능 그룹으로 분류될 것으로 요청됨. 유럽위원회는 이 첨가제가 (EC) No 1831/2003의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저장 조건 명시, 열처리에 대한 안정성 및 물에서의 안정성 명시 등의 전제로 승인함.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40098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400997, <https://eur-lex.europa.eu/eli/reg/2003/1831/oj>

2. 시사점

- 유럽에서 애완동물은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선 인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을 의미하며 애완동물을 위한 복지, 건강, 보호 및 이동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함. 또한 유럽의 동물 사료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상당히 높은 수요를 보이는 만큼 사료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동물 사료 첨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첨가제의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첨가제 신규 승인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함. 한국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양질의 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럽 시장을 진출을 염두에 두는 업체도 많아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는 유럽 연합의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임.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유럽연합, 2025, 2026 및 2027년 농약 잔류 평가를 위한 조정된 관리 프로그램

- 유럽위원회 규정 (EC) 1213/2008은 2009, 2010 및 2011년을 포괄하는 최초의 농약 관리 프로그램을 설정함. 이후 이와 관련된 법률이 주기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것은 실행규정 (EU) 2023/731임.
- 이에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이 농약 관리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에 EFSA는 최소 32가지 다른 제품에 대해 총 683개의 표본을 추출할 것을 제안함. 또한 EFSA는 이런 표본 추출이 이루어질 경우, 허용된 농약 잔류 최대 한계치를 1%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0.75%의 오차 범위 내에서 추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보고함.

- 농약 사용은 새로운 기술도입이나 병해충의 유형변화 또는 규제변경 등으로 인해 3년 동안에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노출과 법률의 적용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EFSA의 제안을 바탕으로 3년 주기의 일련의 제품에서 농약을 모니터링함.

2. 변동사항

- 식물 및 동물 기원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물의 최대 잔류량 준수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농약 잔류물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2025, 2026 및 2027년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정된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실행법률 (EU) 2024/989가 규정됨.
- 이 프로그램 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실행규정 (EU) 2023/731은 폐지됨.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400989

3. 기타 주의사항 등

- 유럽연합은 이와 같은 관리 프로그램의 규정 또는 각 농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인체 유해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음. 이에 많은 업체는 인체에 되도록 무해할 수 있는 살충제 개발에 나서고도 있음. 따라서 관련 업체는 농약사용 금지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변동성을 주의해야 하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1. 통관거부사례 - 기준월(4월)

- 냉동 수의과 제품, frozen veterinary products (2024.3.25.)
 - 통관번호 2024.2345
 - 금지된 수입품으로 네덜란드 국경 검역소에서 통관거부 통보 조치
- 조미 김, seasoned seaweed (2024.4.5.)
 - 통관번호 2024.2697
 - 요오드 과다 함량으로 슬로베니아 국경 검역소에서 정보 통보 조치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